

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 : 1999. 5. 29
-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6.

다. 의안번호 : 제 99-23 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 삭제
-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청취소시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

나. 주요골자

- 제6조 조제목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⇒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

○ 6조 본문

°현 행 : 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함

°개정안 :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3. 검토의견

-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1971년 1월 5일 (조례 제159호)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25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,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본 조례 제6조 “수수료의 불반환 내용이 국민에게 불편사항과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판단”되어 “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내용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반환요구”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”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개정,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

4. 참고사항

- 행정규제기본법(제4조)
 - 제4조(규제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 -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, 또는 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.
 -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- 『조례·규칙·규정』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(99.5.8)